

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

안녕하십니까?

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 경 부위원장님,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20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, 중학교 2개교, 유치원 17개원을 신설하고,
- 초등학교 1개교, 중학교 1개교, 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며,
-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학교 1개교의 교육지원청·자치구명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.

관련 법규는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와
- 교육감의 교육·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“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먼저 2020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입니다.
 - 초등학교는 서울고현초등학교 1개교,
 - 중학교는 향동중학교, 마곡하늬중학교 2개교,
 - 유치원은 서울강솔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12개원,
서울솔가람유치원분원 1개원,
서울동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4개원을
신설하는 것입니다.
- 2020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입니다.
 - 초등학교는 서울염강초등학교 1개교,
 - 중학교는 공진중학교 1개교,
 - 유치원은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을
폐지하는 것입니다.(병설 유치원의 단설 전환)
-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교육지원청·자치구명 정정입니다.
 - 수도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 소속 교육지원청을
중부에서 동작관악으로,

- 자치구명을 용산구에서 동작구로 변경하여 현행화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